

【사건번호 2021-025】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데이터 사건

1. 개요

- 피신청인: 국토교통부
- 대상 공공데이터: 자동차등록데이터

2. 신청취지

- 신청인은 자동차등록번호별 차명, 연식, 형식 데이터를 제공신청하였으나, 자동차등록번호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공거부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
- * OPEN API방식으로 신청인이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피신청인이 차명, 연식, 형식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는 받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함(이하 '이 사건 데이터'라 함)

3. 사실조사

가. 데이터 보유·관리 현황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69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말소등록 등의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이를 전자화*하여 등록원부**를 관리하며,
 -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차운영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10항)
- 이 사건 데이터인 자동차등록번호별 차명, 연식, 형식 데이터를 전자화하여 관리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자동차등록번호별 데이터”의 제공거부에 관한 분쟁조정사건에서 본 위원회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후 제공하라”는 취지의 조정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2017-007, 2018-014사건 등), 2019년 7월부터 “자동차종합정보 첨부형 API”를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음
 - 해당 API는 정보주체로부터 제3자 정보제공동의*를 받은 차량에 한하여 기본(32개), 제원(70개), 정비이력(16개), 성능점검(56개) 등 총 174개 항목**의 데이터를 제공함
 - * 정보주체에게 본인인증 페이지를 호출한 후, 소유자 이름, 차량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 진행
 - ** API 신청 시 174개 항목 중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음
 - 한편 피신청인은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별 정보(차명, 형식, 연식, 매도, 매수)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고 있음

참고

자동차관리법상 전산자료이용신청

□ 신청 및 승인 절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6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용 가능

- (신청)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1. 자료이용의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간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심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 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간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승인)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 국토교통부 장관은 1.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 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간 및 안전관리대책 등, 4. 신청한 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5.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 결정

□ 승인사례

- 보험개발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가입관리), 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매매 관련 업무),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폐차 관련 업무), 유료도로 운영회사(유료도로법에 따른 통행료체납금 통지업무) 등이 동 절차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고 있음

다.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를 의미
 - 이 사건 데이터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업무수행을 위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데이터이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함

라.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해당 여부

-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자동차 등록정보에 관한 것으로 저작권법 기타 법령상 보호되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도 이에 근거한 제공거부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제17조제1항제1호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검토함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음

- 관련 판례에 따르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 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대법원 2012.6.18.선고 2011두2361)

- 개인정보보호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원부에 등록번호, 차대번호와 함께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등록번호 및 차대번호가 자동차등록원부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개인정보정책과-231(2017.8.30.))

- 위원회에서는 자동차 등록번호 자체의 개인정보성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동차 등록번호와 이름만 알면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 법령 및 관행을 고려하면 자동차 등록번호의 개방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2018-014사건)

* 신청인이 자동차 등록번호를 제공하면 국토교통부가 해당 등록번호에 대응하는 자동차의 상세정보(차명, 최초등록일, 취득가액 등 17개 항목) 제공

※ 유사한 사안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자동차 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서울행정법원 2019.8.29.선고 2018구합85143판결)

4. 조정내용

가. 조정결정 사항

-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공공데이터제공거부결정이 타당함을 확인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법 제17조제1항)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법 제17조제1항 제2호)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됨
 -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 본 위원회는 자동차 등록번호와 소유자의 이름만 알면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더 많은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법령 및 관행을 고려하면,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그에 결합한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해당 데이터를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에 따라 제공하도록 조정한 바 있으며(2018-014 사건 등),
 - 행정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19.8.29.선고 2018구합85143판결)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2019.9.23.의결 의안번호 제2019-16-260호)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자동차등록번호에 추가정보를 결합하여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응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데이터는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 사건 데이터 제공신청을 피신청인이 거부한 것은 공공데이터법상의 제공기준에 합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5. 조정결과

- 조정성립